

보도해명자료 (‘12. 9. 18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외국 카지노 자본의 민원에 두손 든 지경부’

(‘12. 9. 18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경향신문은 9.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‘경제자유구역 특별법(이하 ‘경자법’)’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면서,
 - 주요내용으로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“외국 카지노 자본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한 것”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는 ‘특1급 호텔’ 등 대규모 시설투자 이행 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관련 투자유치를 제약하였기에 이러한 투자유치 제약요인*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
 - * 경자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3호
- 현행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 리스크가 급증하여 ‘07년 경자법상 관련 특례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관련 투자가 성사된 바가 없음
- 현재 투자협약 중인 프로젝트 성사시 약 5만명의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유발 예상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이홍열 팀 장 (02-2110-3878)

정민규 사무관 (02-2110-4945)